

심 사 보 고 서

1994. 11. 3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94. 10. 29

○ 회부일자 : '94. 10. 29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94. 11. 3)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 ① '94. 6. 29일까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권은 교통부장관으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권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② '94. 6. 30일자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 되므로 “승인권자와 신청권자가 동일인”이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신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노재청)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해안을 검토한바, 이는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의 건은 교통부장관으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권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4. 6. 30일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승인권자와 신청권자가 동일인”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문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참석 7명, 찬성 7명)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관광과 소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관광과	7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권한위임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현행		개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관광과	7	신설		관광지조성계획 의 승인(변경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